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6. 28 선고 2021가단21556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(담당변호사 전원)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해(담당변호사 박병두)

변 론 종 결 2022. 5. 17.

판 결 선 고 2022. 6. 28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)에 관하여 2017. 8. 2. 체결된 매매계약을 138,497,726원 한도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38,497,7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○ 원고는 2016. 4. 4.~2016. 11. 2. 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. C은 2017. 4. 원고에게 ‘미변제 차용금 119,500,000원을 2017. 7. 30.까지 분할 변제하겠다’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.

○ 원고는 2017. 7. 25.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(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0023호, 이하 ‘관련소송’)를 제기하였다. 위 법원은 2018. 6. 12. ‘C은 원고에게 1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9. 17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에 대한 C의 항소(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8545호)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. 3. 23. 확정되었다.

○ C은 2017. 8. 2.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)을 체결하고 2017. 8. 21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D, 채권최고액 65,000,000원인 2016. 8. 19. 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20. 4. 10. 말소되었다.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

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다만 위 근저당권 말소로 말미암아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채권액인 138,497,726원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

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.

3. 제척기간 경과 여부

○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,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한다. 한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(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).

○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.

- ① 원고는 2016. 2. C을 소개받아 교제를 시작하였고, 2016. 5.~2016. 11. 동거하였으며, C은 동거기간 중인 2016. 7. 18.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. 한편 원고는 2016. 5. 12. 원주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16. 6. 3.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도 있다.
- ② 원고는 종전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법인(유한) E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. 위 법무법인은 2019. 1. 9., 2019. 1. 21. 및 2019. 3. 25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였다.
- ③ 원고는 C을 차용사기로 고소하였다. C은 2018. 5. 23. 사기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9. 9. 23. 유죄판결을 받았다(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291호).

○ 위 법무법인이 원고와 관여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, 위 법무법인은 원고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책임재산 가치 등 현황 파악을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2019. 3. 25. 무렵에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. 여기에다가 원고는 C과 동거하면서 금전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C의 재산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, C을 차용사기로 고소하여 위 열람 당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, 원고는 줄곧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데 C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였다고 주장해온

점 등을 더하여 보면, 원고는 위 열람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즉 이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 상태가 더 심화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19. 3. 25.부터 제척기간 1년이 훨씬 지난 2021. 3. 17.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.

4. 결론

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.

판사 강화석

별지